
- 안전도시 부산 건설을 위한 -

야영장(캠핑장) 관리실태 안전감찰 결과

2021. 10.

I

감찰개요

□ 추진배경

- 주5일 근무제 정착과 여가문화 다양화, 코로나19 관련 비대면 야외 활동 선호로 최근 캠핑 활동인구 증가
- 냉·난방기구 및 취사도구 사용으로 인한 화재, 가스사고 예방 및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등 야영장 안전관리 실태 감찰로 위험요인 사전 발굴 및 조치를 통해 시민안전 사각지대 해소

□ 감찰현황

- (기 간) '21.08.11.(수) ~ 09.30.(목)
- (인 원) 안전감찰팀장 등 8명(외부전문가 3명 포함)
- (대 상) 부산시 소재 등록 야영장 15개(서구 1개소 감찰중 폐업)

소재지 구분	계	기장군	서구 (폐업)	동구	북구	강서구	사상구	비고
일 반 야영장	10	7		1		1	1	
자동차야영장	5		1	1	1	1	1	
합 계	15	7	1	2	1	2	2	

- ▶ 기장군(7), 서구(1), 동구(2), 북구(1), 강서구(2), 사상구(2)
- (방 법) 관련서류 확인 및 현장감찰 병행

□ 중점사항

개별법 인.허가 사전이행 실태

- 야영장 입지가능 용도지역 충족여부 전반
- 건축물 용도 충족여부 전반

등록(변경)업무 처리 및 관리실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적 등록기준(시설물 종류 및 면적 등) 준수여부 전반 ● 변경 등록이행 여부 전반 ● 야영장내 무단 시설물 설치
--------------------	---

위생.안전기준 준수 이행실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체 안전점검 실시 및 결과 등록기관 제출 전반 ● 글램핑 및 카라반간 이격거리 준수여부 ● 각종 안내 게시판 설치 준수여부 ● 각종 시설물 관리실태 미흡 및 시설개선 권고
-----------------	---

II 부산시 등록 야영장 현황

연번	야영장 명칭	소재지	업종 (일반,자동차)	최초등록일
1	더무빙카라반 캠핑	기장군 장안읍 해맞이로 290	일반야영장업	'16.08.25.
2	장안캠프	기장군 장안읍 장안로 18	일반야영장업	'18.11.09.
3	초원숲속야영장	기장군 정관읍 병산1길 18	일반야영장업	'17.09.14.
4	만석곶캠핑장	기장군 장안읍 월내리368-1	일반야영장업	'15.04.27.
5	지오클럽	기장군 기장해안로 1270	일반야영장업	'16.06.22.
6	제이스글램핑	기장군 일광면 화전리 135번지	일반야영장업	'16.07.08.
7	부산카라반파크	기장군 일광면 일광로763	일반야영장업	'16.06.22.
8	송도오토캠핑장	부산 서구 송도해변로 36	자동차야영장업	'17.06.20. (21.09.03.폐업)
9,10	바다가 보이는 부산항 힐링야영장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동 1185-1 (구 부산항 3부두) 지선	자동차야영장업	'17.11.28.
			일반야영장업	'21.07.05.
11	화명 오토캠핑장	부산광역시 북구 강변대로 1629(덕천동)	자동차야영장업	'18.06.19
12,13	대저생태공원 캠핑장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1동 1-5	일반야영장업	'17.07.25.
			자동차야영장업	
14,15	삼락생태공원 오토캠핑장	부산시 사상구 삼락동 29-59번지	일반야영장업	'14.07.21.
			자동차야영장업	'15.08.12.

◎ 야영장은 일반야영장업과 자동차야영장업으로 구분됨(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다목)

* 일반야영장업 : 야영장비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추고 야영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 자동차야영장업 : 자동차를 주차하고 그 옆에 야영장비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추고 취사 등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자동차를 이용하는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Ⅲ 감찰결과

<p style="text-align: center;">총 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p>■ 여가 문화 다양화 등으로 최근 캠핑인구가 증대되고 야영장을 찾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으나, 현재까지 부산시 등록 야영장에 대하여 각종 감사나 안전감찰이 전무하여 안전사고 사각지대로 존치</p> <p>⇒ 부산시 등록 야영장 안전감찰 시행 주요배경</p> <p>■ 관광진흥법에 따라 2015년 야영장 등록제와 안전·위생 기준 법제화가 시행되어 야영장 등록 신청이 많이 이루어 졌으나, 당시 구·군 담당공무원의 여러업무 과중, 해당법령 숙지 미흡 및 개별법 사전 인허가 적정여부 확인 소홀 등 업무한계를 드러냄.</p> <p>⇒ 입지가 가능 용도지역 여부, 건축물 용도 적정여부, 신청 대상지 위치 정확성 등 면밀한 확인필요(관련부서와 협업)</p> <p>■ 2015.3월 발생한 강화도 글램핑장 화재사고 등을 계기로 야영장 안전대책 수립, 지속적인 점검 등 전반적으로 캠핑장 안전관리 실태는 양호한 편이나 일부 미흡한 사항과 시설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확인되었음.</p> <p>⇒ 강력한 구·군의 지도감독 시행 및 사업자의 투철한 안전의식 필요</p> <p>■ 이상기후로 인한 가을장마와 코로나19 거리두기 4단계 등 여러가지 어려운 상황에서도 금회 실시된 안전감찰을 통해 야영장 사업자의 안전관리 의식 고취와 구, 군의 야영장 등록(변경)과 지도감독 업무 역량 향상 기여.</p>
<p style="text-align: center;">주 요 감찰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p>■ (감찰결과) 부산시 15개 등록 야영장에 대해 안전감찰 시행 한 결과, 개별법 인.허가 사전이행 소홀, 등록(변경) 업무 처리 및 관리 소홀, 위생·안전기준 미준수 등 총 20건 위반사항 확인.</p>

**주요
감찰결과**

- **개별법 인·허가 사전이행 실태 전반**
 - ▶ 야영장 입지가능 용도지역 충족여부 확인소홀, 건축물 용도 충족여부 확인소홀 등 등록전 개별법 인·허가 사항 사전이행 및 검토 소홀
 - **등록(변경)업무 처리 및 관리실태 전반**
 - ▶ 관광사업(야영장) 등록신청서 처리 소홀, 관광사업(야영장) 변경등록 등 미이행 실태 확인소홀, 야영장내 무단시설물 설치 등 등록기준 미충족과 변경등록 미이행 등 관련 업무 소홀
 - **위생·안전기준 준수 이행실태 전반**
 - ▶ 자체 안전점검 실시결과 등록기관 제출의무 소홀, 글램핑 및 카라반간 이격거리 준수 소홀, 각종 안내 게시판 및 속도제한 게시판 설치 소홀, 각종 시설물 관리실태 미흡 및 시설개선 권고
- (수범사례 1개) 자체 안전점검 제출지도 및 점검결과 지속관리(서구)
 ■ (권고사항 4개)
- ① 일반야영장업+자동차야영장업 통합등록 검토(동구)
 - ② 야영장내 물놀이시설 안전·위생기준 마련
 - ③ 야영장 자원사업(보조금) 집행 개선 검토
 - ④ 야영장업 등록지 지적공부 지목변경 등록 및 등기촉탁 조치

**조치
계획**

- 지적사항 기관 통보 및 처분요구
- 감찰결과 市 주관부서 및 旣 자치구·군 전파

지적사항 총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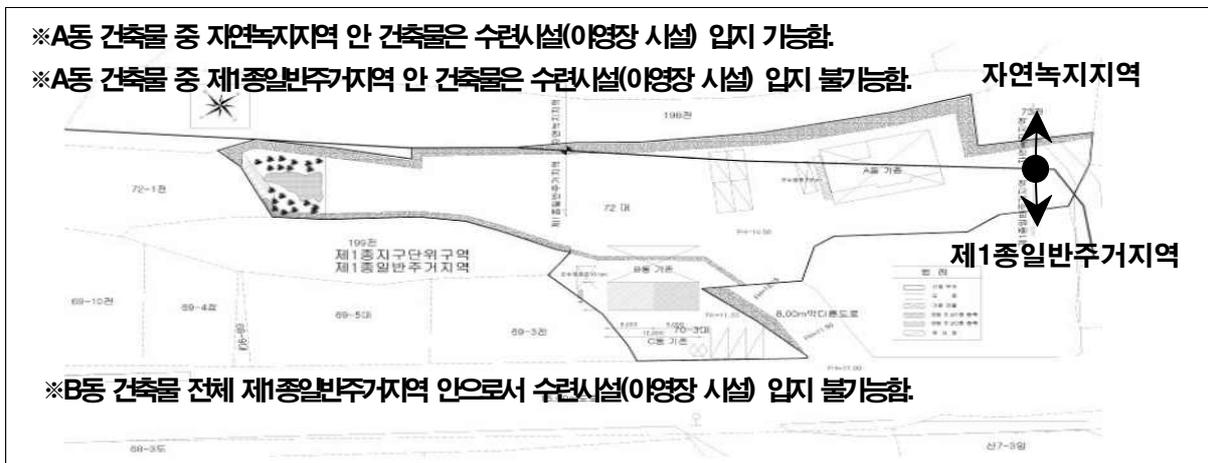
구분	행정상					신분상			
	계	시정	주의	개선	권고	계	징계	훈계	주의
계									
본처분									
현지처분									

III 주요 지적사항

1 개별법 인·허가 사전이행 실태

1-1 야영장 입지가능 용도지역 충족여부 확인소홀

- **[기 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4조(둘 이상의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에 걸쳐 있는 대지에 대한 적용 기준) 제3항에 따르면 하나의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에 용도지역등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용도지역 등의 건축물 및 토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 하도록 되어 있고, 「부산시 도시계획조례」와 「건축법 시행령」에 등에 따르면 수련시설(야영장)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 입지가 불가함.
- **[실 태]** 000에 등록된 0000000 야영장 부지는 두 개의 용도지역 (자연녹지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에 걸쳐 있고, 부지내에는 건축물 2개동(A, B동)이 위치하고 있으며, 그 중에 A동 일부와 B동 전체는 제1종일반주거지역에 포함되어 있어 야영장 등록이 불가능한 입지인데도 불구하고 「관광사업 등록증」을 부적합하게 발급함.



❖ (조치의견)

- ▶ 향후 유사사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자 교육 및 신분상 주의 조치

1-2 건축물 용도 충족여부 확인소홀

- **[기 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관광사업의 등록신청)제4항 제3의2에 야영장업 등록 전에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아서 등록 신청하도록 되어 있고, 「관광진흥법」에 따른 야영장 시설로서 관리동, 화장실, 샤워실, 대피소, 취사시설 등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미만인 것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9호에 따른 야영장 시설(300㎡초과시 수련시설)로 용도부여 된 이후 등록 수리되어야 함.
- **[실 태]** 000에 등록된 5개 캠핑장의 건축물 용도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의한 야영장 또는 수련시설(야영장)로 되어 있어야 하나, 제1·2종 근린생활시설, 동물관련시설(축사) 및 단독주택 등으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등록 수리

연번	명칭	건축물 용도 / 규모 (등록 처리완료 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용도 (등록 신청 전 조치완료 되어야 할 사항)
1	000 000 00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 1개동 / 바닥면적 합계 78.37㎡	“야영장 시설”
2	00 00 000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제2종근린생활시설(체력단련장) / 1개동 / 바닥면적 합계 399.72㎡	“수련시설 (야영장 시설)”
3	000 000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휴게음식점), 축사(농업생산시설) / 4개동 / 바닥면적 합계 405.58㎡	“수련시설 (야영장 시설)”
4	000 000	단독주택(다가구주택) / 1개동 / 바닥면적 합계 182.84㎡	“야영장 시설”
5	00 000 00	단독주택(다가구주택),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휴게음식점),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 2개동 / 바닥면적 합계 342.10㎡	“수련시설 (야영장 시설)”

❖(조치의견)

- ▶ 향후 유사사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자 교육 및 신분상 주의 조치

2

등록(변경)업무 처리 및 관리실태

2-1

관광사업(야영장) 등록신청서 처리 소홀

- **[기 준]** 「관광진흥법」 제4조(등록), 같은법 시행령 제5조(등록기준)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관광사업의 등록신청)에 따르면 야영장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관광사업 등록신청서」에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구청장(군수)에게 제출하고 구청장(군수)은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등 「관광사업 등록증」을 발급한다.

- **[실 태①]** 000에 등록된 000000000은 최초등록시 야영장 전체면적은 $A=659.00\text{m}^2$, 건축물의 바닥면적은 $A=78.37\text{m}^2$ 로서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다목(1)(아)에 따라 건축물 바닥면적이 야영장 전체면적의 10/100 미만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초과(11.89%)하여 등록 수리.

▶ 변경등록시 추가 부지 확보를 통해 등록기준 충족완료

❖(조치의견)

- ▶ 향후 유사사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자 교육 및 신분상 주의 조치

- **[실 태②]** 000에 등록된 0000은 주사업장 소재지를 부산시 000 000 000 000-0번지로 신청 및 등록수리되어 야영장을 운영하고 있으나, 처리당시 업무보고서 상 야영장 현장사진과 실제 현장감찰 확인결과 주사업장 소재지는 000 000 000 000-0번지 일원으로 확인되어 주사업장 소재지가 현장과 일치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관광사업 등록증을 부적합하게 발급



현장 감찰사진
(000 000 000 000-0번지 일원)



업무보고서 상 현장사진
(000 000 000 000-0번지 일원)

❖ (조치의견)

- ▶ 향후 유사사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자 교육 및 신분상 주의 조치

2-2 **관광사업(야영장) 변경등록 등 미이행 실태 확인소홀**

- **[기 준]** 「관광진흥법」 제35조(등록취소 등)에 따르면 관할 등록 기관등의 장은 관광사업의 등록 등을 받은 자가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또는 변경등록 기간 내에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된 영업범위를 벗어난 경우 그 등록 등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시설·운영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 **[실 태①]** 000에 등록된 ①00000000은 카라반 12대로 등록되어 있으나, 등록되지 않은 카라반 3대가 추가 설치되어 있고, ②0000는 고정텐트(글램핑) 3개로 등록되어 있으나 현재 2개소만 운용으로 1개소 감소 중이며, ③0000은 카라반 8대로 등록되어 있으나, 4대를 추가 운용, ④0000000는 카라반 15대이나, 현재 14대로 영업중이나 변경등록 미이행

	
00000000(카라반 12→15) 증3	0000(글램핑 3→2) 감1
	
0000(카라반 8→12) 증4	0000000(카라반 15→14) 감1

- [실 태②] 000에 등록된 ①00000000은 등록된 영업범위를 벗어난 건축물을 야영장 시설로 게시하고, ②000000000000은 야영사이트를 벗어난 나대지에 개인 카라반 3대 설치

	
0000000(힐링펜션으로 게시)	0000 건물 현장사진
	
00000 카라반 설치 위치도	00000 카라반 설치 현장사진

❖ (조치의견)

- ▶ 향후 유사사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자 교육 및 신분상 주의 조치

2-3 야영장내 무단 시설물 설치

- [기 준] 000 0000000에서는 2013년 및 2016년에 국·시비 등을 투입 해서 000 둔치에 00과 000000 캠핑장 조성을 위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하천법 제30조에 따라 하천점용공사허가를 받고, 사업완료 후 준공인가증을 받아 야영장을 운영중에 있으며, 추가적인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함.
- [실 태] 000에 등록된 000000000과 000에 등록된 000000000에는 하천공사(점용) 준공인가증(시설물) 이외의 시설물(컨테이너, 경량철골)이 무단으로 설치되어 있음.



000000(컨테이너 1동 무단 설치)



000000(컨테이너 1동 무단 설치)



000000(컨테이너 1동 무단 설치)



000000(경량철골구조 무단 설치)

❖(조치의견)

- ▶ 향후 유사사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자 교육 및 행정상 시정 조치

3 위생·안전기준 준수 이행실태

3-1 자체 안전점검 실시결과 등록기관 제출의무 소홀

- **[기 준]** 「관광진흥법」 제20조의2(야영장업자의 준수사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2(야영장의 안전·위생기준) 별표7에 따라 야영업자는 야영장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매월 1회 야영장내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점검표에 기록하여 반기별로 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점검 결과를 2년 이상 보관하도록 규정
- **[실 태]** 부산시에 등록된 15개 야영장중 일부 야영장은 매월 자체 점검을 시행하고 점검결과표를 자체 보관정도는 하고 있으나, 규정에 따라 반기별로 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는 야영장은 00에 등록된 0000000 밖에 없으며, 등록기관에서도 점검결과 제출을 독려하지 않고 있음.
 - ▶ 0000000은 수범사례로 타 등록기관 전파조치

❖(조치의견)

- ▶ 향후 유사사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자 교육 및 행정상 시정

3-2 글램핑 및 카라반간 이격거리 준수 소홀

- **[기 준]** 「관광진흥법」 제20조의2(야영장업자의 준수사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2(야영장의 안전·위생기준) 별표7 제1호 화재예방 기준에 사업자가 설치하여 제공하는 야영용 시설(글램핑, 카라반 등)과 야영용 시설 사이에는 3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함.
- **[실 태]** 000에 등록된 ①0000은 2번과 3번사이, 7번과 8번 카라반 사이의 이격거리가 약 1m로 정도로 기준 미충족, ②000000은 글램핑 1,2,3,4호 이격거리가 약 2m로 기준 미충족, ③00000000과 ④00000000는 카라반과 카라반 사이에 바비큐장이 있고, ⑤00000는 글램핑과 지붕이 설치된 테크와의 이격거리가 부족하여 법령취지에 맞게 이격거리 재검토토록 권고
 - ▶ 유예기간 2년 종료로 2021.03.04.이후 의무사항



		
00000000(바비큐식탁)	0000000(약 2m)	0000(약 1.5m)

❖ (조치의견)

- ▶ 향후 유사사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자 교육 및 신분상 주의

3-3 각종 안내 게시판 설치 소홀

- [기 준] 「관광진흥법」 제20조의2(야영장업자의 준수사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2(야영장의 안전·위생기준) 별표7 제4호 대피관련 기준 다목에 따라 야영장 시설배치도, 대피소대피로 및 소화기, 구급 상자 위치도, 비상연락망, 야영장 이용방법, 이용객 안전수칙 등을 표기한 게시판을 이용객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설치하여야 하고, 제5호 질서유지 및 안전사고 예방기준 거목에 따라 야영장 내에서 차량이 시간당 20킬로미터 이하의 속도로 서행하도록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함.
- [실 태①] 000에 등록된 ①00000000은 게시판 위치가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안내실 내부)에 설치, ②0000은 미설치, ③0000000은 게시판에 시설배치를 수정(힐링오토캠프장→일반야영사이트)필요, ④0000000는 태풍으로 인한 파손후 미설치, 00와 00에 각각 등록된 ⑤00 00000과 ⑥00 0000000은 일반 안내게시판은 설치되어

있으나 000 둔치에 설치된 만큼 침수를 대비하여 비상대피로 등을 표기한 별도 게시판 설치필요.

<p>0000000(인지애로)</p>	<p>0000000(시설배치도수정) 힐링오토캠핑장→일반야영사이트</p>	<p>예시(비상대피로 게시판)</p>

❖ (조치의견)

- ▶ 향후 유사사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자 교육 및 행정상 시정

□ [실 태②] 00에 등록된 ①000 000 000 00000과 00에 등록된 ② 0000000 및 000에 등록된 ③000000 000은 오토캠핑장으로서 야영장내 차량이 시간당 20킬로미터 이하의 속도로 서행하도록 하는 속도제한 안내판 미설치



설치예시(000000 오토캠핑장)

❖ (조치의견)

- ▶ 향후 유사사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자 교육 및 행정상 시정

3-4 각종 시설물 관리실태 미흡 및 시설개선 권고

- **[기 준]** 「관광진흥법」 제20조의2(야영장업자의 준수사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2(야영장의 안전·위생기준) 별표7에 따라 화재예방 기준, 전기 사용기준, 가스 사용기준, 대피 관련 기준, 안전사고 예방 기준 등에 맞게 야영장 시설을 유지·관리 및 운영하여야 한다.
- **[실 태]**
 - (종합) 외부전문가와 합동 안전감찰 결과 위생·안전기준 미흡 사항, 위험요인 제거 및 시설개선 권고
 - (화재 예방기준 미흡) 소화기 추가, 일산화탄소 감지기 미설치, 소화 시설 미비치,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 미설치, 비상손전등 설치권 고.(000000, 0000, 0000, 0000, 000000, 000000)



000000 소화기 추가설치 권고



000000 소화기 추가설치 권고



0000소화시설(소화기,방화수 등) 미비치



000000 연기감지기 고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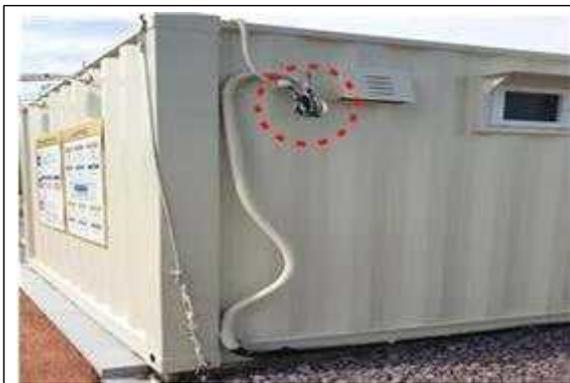
000000 연기감지기 설치권고



000000 휴대용비상조명등 설치권고

○ (전기 사용기준 미흡)

(00000000, 0000000)



00000000 점검박스 미설치



00000000 CD관 교체



00000000 시설물 사이 노출 전선



00000000 감전예방 접지선 미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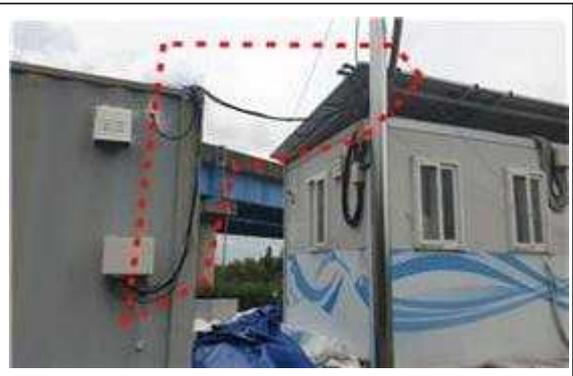
000000 전면 투명판 파손



000000 보관함 문 뒤틀림 발생



000000 HI-PVC박스 변경 및 접지선 설치필요



000000 노출 케이블 전선관 설치필요



000000 감전예방을 위한 접지선 누락



000000 분전반 DOOR 파손

○ (가스 사용기준 미흡)

(000, 0000, 000, 00000)



000 용기보관실 미설치



0000000 가스배관 및 트윈호스 미설치



0000 가스배관 부식 및 호스사용



0000 중간밸브(퓨즈콕) 미설치

○ (안전사고 예방기준 미흡)

(0000, 000000)



0000 추락방지시설 개선필요



0000 추락방지시설 개선필요



000000 개수장 전면 타이어 공기압부족



000000 개수장 후면 타이어 공기압부족

❖ (조치의견)

- ▶ 향후 유사사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자 교육 및 행정상 시정

V

수범사례

제 목 : 자체 안전점검 제출지도 및 점검결과 지속관리(서구)

- 운영자의 자발적 안전점검 이행 및 이용자 안전 확보를 위하여 야영장 자체점검 및 결과제출 지도감독 확행
- 야영장 안전점검에 따른 지적사항 조치 여부를 확인하여 이용자 안전 확보 및 사고 예방 기여

□ 수범내용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야영장의 안전·위생기준에 따라 운영자가 월1회 이상 야영장 내 시설물을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반기별로 구청장에게 보고토록 지도감독 확행
- 대부분 타 야영장은 자체점검은 실시하나, 점검결과 구청에 미제출

구 분	상반기		하반기	
	점 검 일	보 고 일	점 검 일	보 고 일
2017년	개업 전		매월 1일	2018.01.09.
2018년	매월 1일	2018.07.02.	매월 1일	2019.01.02.
2019년	매월 1일	2019.07.18.	매월 1일	2020.01.17.
2020년	매월 1일	2020.07.27.	매월 1일	2020.12.22.
2021년	매월 1일	2021.09.03.	폐업으로 운영 종료	

- 구청장 주관 야영장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지적사항을 운영자에게 통보이후, 지적사항 조치여부에 대한 재점검을 통해 조치완료 확인을 최종적으로 거친후 결과보고하여 이용자 안전사고 예방기여
 - ▶ 안전점검 실시 : '18.07.10
 - ▶ 안전점검 결과보고 : '18.07.11
 - ▶ 안전점검 결과통보 : '18.07.13(지적사항 4개 조치토록 통보)
 - ▶ 안전점검 재결과보고 : '18.10.12(지적사항 4개 조치완료)
- 대부분 타 야영장은 점검결과 통보후 이후 조치사항 확인소홀

□ 기대효과

- 안전점검 정례화를 통한 운영자 안전의식 확립 및 점검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여부 확인을 통해 운영자 경각고취와 안전사고 선제적 대비

VI 권고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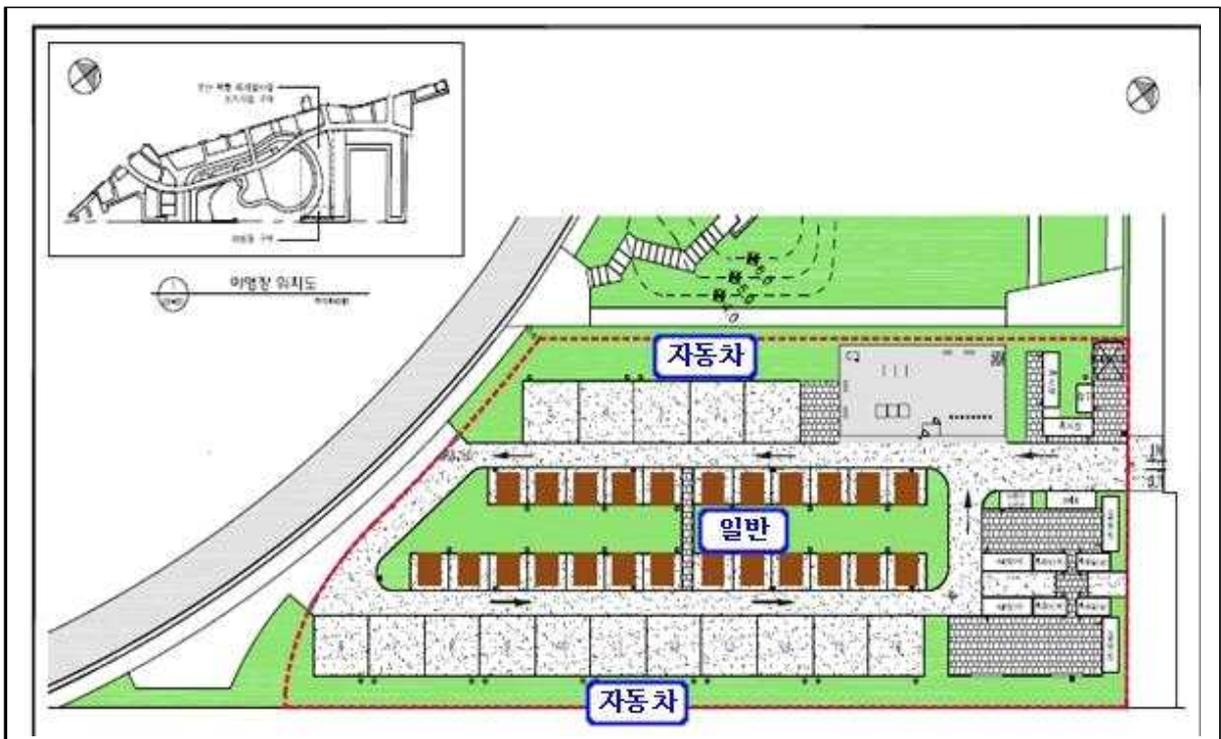
권고1 일반야영업+자동차야영업 통합등록 검토(동구)

□ 현 황

- 동구 등록야영장 현황

연번	야영장 명칭	소재지	업종	등록일
1	바다가 보이는 부산항	동구 초량동 1185-1 지선	자동차야영장업	17.11.28.
2	힐링야영장		일반야영장업	21.07.05.

- 부산항만공사에서는 북항재개발사업지 복합항만지구내에 2017.11.28.자 동구청에 자동차야영장업(오토캠핑장 16면)을 등록하여 운영중에 있고, 2021.07.05.자로 야영장 부지 가운데 유희공간에 별도로 일반야영장업(야영테크 24면)을 등록하여 야영장을 각각 운영하고 있다.
- 야영장 시설배치도(가장자리 자동차 / 가운데 일반)



□ 문제점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라 ‘일반야영장업’은 야영장비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추고 야영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이고, ‘자동차야영장업’은 자동차를 주차하고 그 옆에 야영장비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추고 취사 등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자동차를 이용하는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이다.

┌ 일반 야영장 : 사이트 당 15m² 이상, 각종 편의시설

└ 자동차야영장 : 사이트 당 50m² 이상, 각종 편의시설

- 문화체육관광부에게 발행한 「2021 야영장업 지자체 업무매뉴얼」에 따르면 일반 및 자동차 야영사이트가 혼재되어 운영되는 곳이 많은데 함께 운영할 경우에는 각각 분리하여 등록이 가능하며, **분리등록이 불가능한 경우, 일반야영장업으로 등록**하되, 자동차를 함께 주차하는 사이트는 **자동차야영장업 등록기준**(사이트 50m²이상, 1차선 이상의 차로)**충족**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 그리고, 부산에 혼재 등록된 캠핑장을 예를들어 보면 부산시 낙동강 관리본부에 설치한 대저와 삼락생태공원 캠핑장은 당초 조성때부터 진입도로 별도, 시설배치를 달리하고, 편의·위생시설(화장실, 개수장, 샤워장 등)도 야영장별로 조성하여 분리등록을 하였으나,



- 동구에 등록된 바다가 보이는 부산항 힐링 야영장은 부산항만공사에서 당초에 자동차야영장업을 등록하고 이후 부지 가운데 유희공간에 일반야영장업을 추가 등록하였으나, 진·출입도로를 같이 사용하고, 시설 배치와 입지상 야영장별 분리가 어렵게 구획되어 있으며, 각종 편익·위생시설(취사장, 샤워장, 화장실 등)을 함께 공유하는 등 등록기관인 동구청과 운영자인 부산항만공사 입장에서는 굳이 분리등록을 통해 2개의 등록증을 관리하는 것이 불합리하고, 또한 잦은 변경등록(대표자 변경 등)시 행정낭비(면허세 각각 납부 등) 요인과 각종 지도·점검·감독의 비효율성을 종합해 볼 때 분리등록된 시설을 일반야영장업으로 통합하여 관리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됨.

□ **조치의견**(검토부서 : 동구 문화체육관광과)

- 동구청 문화체육관광과에서는 상기 문제점에 대해 타 지자체에서 일반과 자동차야영장업이 혼재되어 운영하는 야영장에 대한 사례 조사와 법적검토(행정효율) 및 운영자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통합등록 여부에 대한 적절한 조치 필요.

권고 2 야영장 내 물놀이시설 안전·위생기준 마련 권고

□ 현황 및 기준

- 「야영장의 안전·위생기준」 제5호 거목에 따라 야영장 내에서 수영장 등 체육시설, 놀이터 등의 부대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기준 준수토록 규정

□ 현 실태 및 문제점

- 야영장 내 간이 물놀이시설(수영장 등)을 설치하여 사용자들에게 제공하고 있으나, 일부 시설의 경우 구체적인 안전·위생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 부재로 점검대상에서 제외되어 안전·위생 상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실정임.

표1) 물놀이시설 분류

구 분	명 칭	관계 법령	적용 기준	비 고
수심 0.3m 이하	물놀이형 수경시설	물환경보전법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 기준 및 관리기준	
수심 0.3m 초과 ~ 수심 0.9m 미만	물놀이형 어린이 놀이시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규정	
수심 0.9m 이상 ~ 수심 2.7m 이하	체육시설 (수영장)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 안전·위생기준	

□ 조치의견(검토부서 : 市 관광진흥과)

- ① 야영장업 관광사업 등록시 사업계획서 및 시설물배치도 상 간이 물놀이시설이 설치될 경우, 수조의 수심에 따라 표1)의 안전·위생 관련 법령 적용여부를 검토하여, 법적 근거 부재로 인한 관리 사각 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 마련.
- ② 자치구·군 통일성 유지를 위해 동일 기준을 마련토록 하고, 야영장 등록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직무교육 및 전반적인 관리실태 지도·감독 강화.

□ 야영장 지원사업 현황

- 야영장이 지속 확대됨*에 따라 안전한 야영 환경 조성 및 관련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 도모

* 국내 등록야영장수: ('17)1,927개 → ('18)2,214개 → ('19)약 2,356개 → ('20)약 2,500개

* 부산시 등록야영장수: 15개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19.3.4.)에 따른 야영장 안전·위생 기준 강화 및 관련기준 변경 사항의 원활한 현장 적용을 위한 업계 지원

▷ 지원내용 :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안전시설) 전기·가스시설, 경보기, 재해방지시설, 조명시설, CCTV, 긴급방송 시설, 대피소, 비상용발전기, 안전·안내 게시물, 낙석·붕괴 방지시설, 잔불처리 시설 등

▪(위생시설) 급수·배수시설, 상·하수도 시설, 화장실 및 취사시설 등

▷ 부산시 야영장 지원 현황 (국·지방비)

(단위 : 천원)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교부액(국·지방)	23,100	45,550	46,800
지원야영장 개수	1개소	2개소	2개소

* 분담비율 : 국비 40%, 지방비 30%, 자부담 30%

□ 현 실태 및 문제점

- 중앙정부·지자체에서 야영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사업은 상기 지원 뿐이며, 매년 2개소(20백만원/개소당) 정도가 지원되며, 1회 지원시 3년내에는 지원 불가.

☞ 전체 야영장 형평성 고려시 7년 주기임.

-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계 법령에 명시한 점검표(안전점검 체크리스트 34개 항목)에 따라 매월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반기별로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감사결과 모든 야영장이 수년간 '이상없음'으로 형식적인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임.

- 야영장은 특성상 매년 소규모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항이 발생하는 시설이나, 매년 1~2개 특정야영장에 대한 집중 지원으로는 부산시 전 야영장의 긴급 정비를 요하는 적재적소의 시설개선에 한계가 있음.

□ **조치의견**(검토부서 : 市 관광진흥과)

- 법 취지에 따라 매월 안전점검에 의거 보수·정비가 필요한 사항이 부산시 모든 야영장에 전반적으로 지원 될 수 있는 방안 검토.
- 감사결과 현재까지 야영장을 대상으로 시 주관부서에서 안전점검을 시행한 사례가 없어 정기적인 야영장 안전점검 운영 검토
(ex, 행락철 대비 야영장 관리실태 등)

권고 4

야영장업 등록지 지적공부 지목변경 등록 및 등기촉탁 조치 방안 마련(기장군)

□ 현 황

○ 기장군 등록야영장 현황

연번	야영장 명칭	소재지		비고
1	더무빙카라반 캠핑	장안읍 월내리	552-15번지(대지), 553-2번지(잡종지)	2필지 지적공부 지목(유원지)변경 등록 대상
2	장안캠프	장안읍 기룡리	448번지(유원지)	-
3	초원숲속야영장	정관읍 병산리	566번지(유원지), 567-1번지(유원지), 258번지(유원지)	-
4	만석곶캠핑장	장안읍 월내리	368-1번지(대지), 368-2번지(유원지)	1필지 지적공부 지목(유원지)변경 등록 대상
5	지오클럽	일광면 삼성리	151-1번지(잡종지)	1필지 지적공부 지목(유원지)변경 등록 대상
6	제이스글램핑	일광면 화전리	135번지(대지)	1필지 지적공부 지목(유원지)변경 등록 대상
7	부산카라반파크	일광면 문동리	72번지(대지), 70-3번지(대지), 70-7번지(도로), 199번지(주차장)	4필지 지적공부 지목(유원지)변경 등록 대상

□ 현 실태 및 문제점

- 체육용지에서 제외되어 구분이 모호했던 야영지는 유원지로 구분하여 그 지목을 명확하게 하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¹⁾」이 2020. 6. 9. 일부개정되어 2020. 6. 11. 시행되었음.
- 아울러, 동 시행령 부칙 제2조(지목변경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르면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목이 등록된 토지 중 제58조(지목의 구분)의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0. 6. 11] [대통령령 제30775호, 2020. 6. 9, 일부개정]

개정규정에 따라 지목변경이 필요한 토지는 이 영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지적소관청이 조사·측량하여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지목으로 바꾸어 지적공부에 등록하고, 법 제89조에 따라 관할 등기관서에 그 등기를 촉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기장군에 등록된 야영장 7개소 중 5개소는 동 부칙에 따라 기장군 토지정보과에서 야영장업으로 등록된 토지를 조사·측량하여 지적공부 지목변경 등록 및 등기촉탁을 2023. 6. 10.까지 조치완료 하여야 함.

□ **조치의견**(검토부서 : 기장군 문화관광과, 토지정보과)

- 기장군청 문화관광과와 토지정보과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사항을 숙지 및 부서간 협조 등으로 법령 이행에 대한 방안 마련 검토.